



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페쇠(M. Pêcheux)의 담론 분석 틀을 중심으로*

홍남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namheehong777@gmail.com

이 연구는 2011년 말~2012년 초 SNS를 통해 정권 비판적 발언을 한 세 명의 판사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로 인해 촉발된 법원 내부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판사들의 SNS 발언은 〈조선일보〉의 1면 단독 보도에 의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하고, 발언의 내용이나 주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담론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SNS가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이나, 법관의 SNS 이용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이나 등에 대한 담론을 통해 SNS에 대한 ‘권력-지식’의 관계, 뉴미디어에 대한 권력의 담론 전략, 그에 따라 형성되는 ‘품행의 인도’로서의 규범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담론의 정치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보도 분석과 법원 내부 담론을 미셸 페쇠의 선구성(the preconstructed), 절합(articulation), 호명의 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적 공간으로서의 SNS와 사적 공간으로서의 SNS, 공인으로서의 법관과 사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담론상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사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과 전제에 입각해 법관이라는 특정한 주체의 정치적 표현과 행동, 규범

*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수정·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학위논문의 심사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익명의 심사자 세 분 선생님들의 유용한 심사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 신문 중심으로 특정한 ‘막말’ 표현이 과도하게 인용되면서 법관의 ‘자질’이 문제화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을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사안에서 보수/진보 신문의 담론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 글은 보수 신문의 의제화가 법원 내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조직 내 미디어 이용 윤리를 규범화하고 조직원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졌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또 이는 법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규범화/정상화의 권력 작용 및 주체 형성 과정과 연관된다.

K E Y W O R D S 소셜미디어 • SNS • 공·사 영역 • 공인 • 법관 • 담론
• 폐쇠 • 통치성

1. 들어가며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한 부 장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등의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FTA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11월 25일자 〈조선일보〉 1면에 단독 보도되면서 판사의 SNS 이용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윤리위원회 개최, 법관의 SNS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른 판사들의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 등의 발언이 역시 〈조선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되면서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SNS의 매체적 특성, ‘공인’으로서 법관의 적절한 발언에 대한 규범화 논의가 촉발되었다. 나아가 이는 법원 조직 내에서 법관의 SNS 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했으며, 법관의 SNS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2008년 보수 정권의 집권 이후 촛불 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으로 다음 아고라, 아프리카 TV를 비롯하여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정권과 대립되는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진원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뉴미디어가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와 대안적 뉴스를 유통시키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공간이자 시민 저항의 미디어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기득권층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으로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담론을 형성하여 거기서 적절한 행위를 목록화하는 등으로 ‘품행을 인도’하고자 했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법관들의 SNS 발언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그리하여 법원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체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론’이 수행하는 물질적, 대립적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매체의 특성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 범주가 담론을 통해 구성되며, 이것이 개개인의 품행을 관리하는 통치의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담론은 단지 ‘언어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고 특정한 주체를 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수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SNS가 공적 공간이라고 규정되면 국가나 조직이 개인의 미디어 이용 행위에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반대로 SNS가 사적 공간이라고 규정되면 SNS 통제에 대한 개인의 저항감이 커지게 된다. 또 SNS 등장 이후 이른바 ‘공인’과 ‘사인’의 정의와 경계, 그리고 각각에 할당된 표현의 가능 범위, 방식 등이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다. 법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군인, 교사 등의 공무원이나 나아가 언론인, 회사원 등 다양한 조직체 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 표현을 대체로 금기시해온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조직 내 개인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이 주목하려는 것은 고정된 공·사의 경계와 정의가 아니라, 동시대의 맥락에서 어떤 것을 공·사로 규정하는 ‘담론’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물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어져온 공·사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담론에 반영되며, 그것이 각 영역에서 적절한 행위, 발언 주체의 적절성 등을 논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준이

치(Junichi, 2000/2009, 36쪽)는 공공적 공간이란 “공·사의 경계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가 행해지는 장소”이며, “무엇이 공공적인 테마인가는 의사소통에 선행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뉴미디어의 매체적인 특성, 거기서 적절한 발화의 내용, 주체, 방식 등을 규정하며, 그에 따라 ‘품행을 인도’하는 담론의 수행적,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법관의 SNS 이용 관련한 미디어 담론과 법원 내부 담론을 미셸 페쇠(M. Pêcheux)의 담론 이론을 틀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페쇠의 담론 이론은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사회의 대립적인 담론 구도를 파악하게 하고 담론의 물질성, 수행성,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페쇠의 틀을 통한 담론 분석을 통해 뉴미디어의 특성과 법관의 의견 표현에 대한 담론의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관이 준수해야 할 미디어 이용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안을 통해 매체의 특성과 적절한 규범에 대한 정의가 담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론이 개인에게 체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물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공·사의 이분법과 담론의 역할

1) 공·사의 역사적 논의와 시사점

여기서는 먼저 공·사 영역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 전제를 살펴봄으로써 SNS와 법관의 역할에 대한 담론 형성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공·사 영역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정의해 왔는데, 공적 영역은 이성/언어(logos) 중심의 공적 영역(polis)과 생물학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oikia)으로 분명하게 대비된다. 공적 영역은 주로 공식

적인 것, 국가, 민주주의, 공동 선, 숙의, 남성 등의 가치와 연관되어 왔고, 사적 영역은 비공식적, 정서적, 사적 소유, 시장, 경제, 가정, 친밀성, 여성 등의 가치와 연관되어 왔다(김예란, 2010, 152쪽; 김홍중, 2013, 5쪽 참고). 이와 같은 구분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것이며,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우등 혹은 열등한 것으로 규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말하는 조에(zoē)는 사적 영역에 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를 말하고 정치적 삶을 말하는 비오스(bios)는 공적 영역에서 획득되는 생명의 양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에게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오스’, 즉 ‘정치적인 것’의 원리였다(Arendt, 1958/1996, 236쪽; 김홍중, 2013, 5쪽). 이는 특정한 주체를 사회 내의 가시적인(visible) 주체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이러한 공·사의 이분법과 연관되어 있으며,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공·사 영역에서 특정한 주체의 참여 권리, 특정한 발언 내용 및 표현 방식의 적절성 여부, 특정한 외양의 배제 등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간 행위자들 내부의 질서를 정립하고 특정한 구성원들을 포함 혹은 배제하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18, 19세기 종교의 쇠퇴, 자유주의의 영향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테일러(Taylor, 2004/2010, 52쪽)에 의하면 ‘경제’ 영역의 부상과 함께 ‘일상생활의 긍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친밀성 등 이른바 ‘사적인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이는 종교개혁, 자본주의, 사회계약론 등의 구조적, 담론적 변화가 개개인의 미시적인 일상의 소중함을 부각시켰다는 점과 함께, 푸코(Foucault, 1977~1978/2004)의 논의대로 통치의 기제가 개인의 출생, 출산, 사망 등의 사적이면서도 생 정치(bio-politics)적인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른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라 불리는 영역의 발생에 따라 국가, 사회, 경제, 개인 간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는데, 푸코의 논의는 경제 영역이 국가 운

영의 중요 요소가 되면서 국가가 개인, 가족, 공동체, 인구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방식과 정도로 개입을 ‘조절’하는 과정이 자유주의의 역사임을 보여 준다. 즉, 사적 영역,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 시장, 인구 등의 차원이 분명히 국가적 차원의 통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의미 있는 주제로 부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적 영역이 여전히 공적인 것과의 대비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국가나 기업 등의 ‘권력’에 의해 세밀하고 미세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식과 담론의 영역으로 부상했다는 의미기도 하기 때문이다.¹ 준이치(Junichi, 2009/2010, 35쪽)는 근대의 ‘공공성’이 많은 주제들을 ‘사적인 것’으로 규정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공과 사를 나누는 것에 있어 ‘담론’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우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첫째, 국가와 민간의 대립으로, 둘째,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셋째, 공개성과 폐쇄성의 대립으로 정리한다. 그런데 무엇이 국가에 속해야 하고 민간에 속해야 하는지, 무엇이 공통의 화제이고 무엇이 개인적인 것인지, 공개성과 폐쇄성은 어떻게 정의되고 그에 따른 행위의 규범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은 담론 이전, 정치 이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Junichi, 2009/2010, 18~19쪽).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공·사 영역에 대한 기준의 논의와 전제가 뉴미디어인 SNS와 어떻게 관련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행위의 규범화를 시도하는 데로 나아가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담론’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로는 SNS라는 뉴미디어의 특성과 법관의 의무가 공·사의 논의

¹ 이는 가정, 감정, 친밀성, 개인, 여성 등의 이른바 ‘사적 영역’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 기본주의 체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노동자의 일상을 위무해 주는 감정적·정서적 공간이자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는 재생산 및 교육의 공간으로써 가정이 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 국가적, 경제적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와 어떻게 결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 공·사 영역에 대한 논의와 SNS

공·사 영역에 대한 기존 논의와 전제가 새로운 미디어인 SNS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매체의 “공·사적 중첩성”(류정호·이동훈, 2011, 315쪽)에 따라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매체의 특성을 정의하는 ‘담론’의 작업이 필요해진다. 둘째, 공·사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공인·사인의 구분으로까지 확장되어 공인으로서, 사인으로서 행해야 할 적절한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 영역에 대한 논의는 SNS의 매체 특성을 정의하고, 법관의 ‘공인’으로서의 특성과 ‘사적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이분화하는 데 적용된다.

먼저 SNS의 매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SNS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SNS는 다른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의 다른 장르들과 유사하지만, ‘개인’이 공적 [혹은 반(半) 공적인] 프로필을 구성하여 인맥을 맺고 그들을 분류하며,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들을 볼 수 있고 획단할 수 있게 하는 웹 기반 서비스라 볼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boyd, 2011, p. 43 재인용). 이렇듯 ‘개인’을 미디어 이용 주체로 부각시키고 개인의 인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SNS는 기존 매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개인적 관련성(personal relevance)’을 갖는다(김선정·김태용, 2012, 6쪽).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아 사이의 ‘일체감’을 높이고 인맥 중심의 정서적 연결을 강조하는 SNS 특유의 매체적 특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SNS가 새로운 매체로 부각된 이유는 기존 매스미디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이용자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적 공간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좋아요 경제(like economy)’(Gerlitz & Helmond, 2013)를 구성하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친교’ 중심의 SNS는 그 정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는다. 밀러(Miller, 2008, pp. 395~396)는 이러한 친교 중심의 소셜미디어 문화를 ‘사교 문화(phatic culture)’로 명명한다. 사교 문화에서는 대화 내용 그 자체보다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환기시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며 공통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연결감(connectedness)’(van Dijck, 2013)이 중요하다. 단문 위주의 근황 업데이트, 댓글, 좋아요, 리트윗, 공유 등의 행위, 짧지만 지속적인 ‘스몰 토크(small talk)’는 ‘연결된 실재(connected presence)’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iller, 2008).

이러한 사적이고 일상적인 메시지가 개인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작성될 수 있다. SNS는 도시 공간을 이동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틈새 시간 미디어”(이재현, 2004, 105쪽; 이재현, 2012, 336쪽 재인용)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SNS 대중화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²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공간의 유동성과 관련해 물리적 공·사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어(文語)의 특징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상적인 구어(口語)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의 경계는 물론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흐릿하게 한다(이재현, 2012; Papacharissi, 2010).

따라서 SNS는 개인, 사적 행위, 감정을 부각시켜 ‘대중(mass)’의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개인을 소환한다. 이는 대중 미디어의 특성과 대비되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긍정적 가능성으로 부각된다. 또

2 국내의 경우 2014년 3월 기준으로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 수가 1천 3백만 명에 이르며, 그중 92%가 모바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고 있다. 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5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모바일 카카오톡과 연동한 폐쇄형 SNS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4천여 명에 달한다는 것도 국내 SNS 이용의 특징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8, 60쪽)

SNS는 아렌트적 의미에서 ‘사적(private)’, 즉 타자와의 소통이 ‘박탈’되어 있었던 대중 사회에서 개인의 소외를 극복할, 그리하여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공적 공간을 회복할 가능성의 매체로 부각된다.³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SNS는 대중 미디어 시대에는 제한되어 있었던 평범한 개개인의 발언권을 확장시키고, 그간 공적 공간에 나타나지 못했던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뉴미디어로 주목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권력의 입장에서 집단 정체성의 질서와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성을 가진 개인 그리고 하나의 정상 분포로 다루어져야 할 ‘인구’가 개별의 정치적 의사를 가진 ‘인민’으로 변화할 위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 이용자 개인의 감정, 일상, 막말 표현 등 이른바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표현 행위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적 공간으로 계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개인은 SNS를 표현의 공간이자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권력의 개입을 불쾌하게 여기는 한편, 권력은 여전히 ‘전파성’과 ‘공연성(공개성)’을 이유로 뉴미디어를 ‘공적 공간’으로 규정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이는 여전히 공·사의 위계에 의해 뉴미디어 규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디어가 공적 공간으로 규정된다면, 거기에서 적절한 발화 방식, 내용, 주체가 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SNS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공간으로 공개성과 전파성을 가졌으므로 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문재완, 2012). 또 다른 한편으로는 SNS가 이용자 관계망 중심의 소통으로 ‘사적’ 성격

3 근대화 이후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대중 사회(mass society)의 출현은 개개인의 개성을 말살시키고 전체화하며 사고하지 않는 대중을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또 공적 영역이 ‘식민화’, ‘상업화’ 혹은 ‘재봉건화’됨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사적 공간으로 ‘박탈’되며 타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비판받아 왔다(Arendt, 1958/1996; Habermas, 1990/2001; Junichi, 2000/2009).

이 강하며, 사적 개인 또한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전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의 허용’ 정도로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며, SNS 소통이 담벼락, 화장실 낙서, 술자리 농담 등의 사적이고 구술적인 특징을 가졌으므로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박경신, 2012). 이와 같이 SNS의 매체 특성을 둘러싸고 공적 성격을 강조하느냐, 사적 성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개인의 매체 이용에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3) 담론과 통치성

이에 더하여 이 논문이 다루려는 법관의 SNS 이용 문제는 SNS의 공·사적 특성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SNS 상 ‘영향력자’(influencer)⁴로서의 공인(公人)과 사적 개인으로서의 사인(私人)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밝히는 문제까지 포괄한다. 왜냐하면 공인이냐, 사인이냐에 따라 공적 공간/사적 공간에서 적절한 행위의 범주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NS의 매체적 특성과 SNS 상 ‘영향력자’(influencer)에 대한 규정이 권력의 입장에서 중요한 작업이 된다. SNS 등장 이후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대중 매체에서 재인용되면서 사회적 의제설정 및 여론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이러한 관점에서 SNS상 영향력자 의 발언은 대중 동원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SNS는 하나의 작은 사건과 실마리가 폭발적인 대중 동원의 매체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권력은 SNS의 공연성과 전파성, 법관의 공인으로서의 의무 등을 강조하며 SNS상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려 한다.

⁴ 이원태·차미영·양해륜(2011)에 의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소비자나 이용자들의 여론이나 신념, 소비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개인들’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해 왔는데,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 ‘유력자’(influentials), ‘영향력자’(influencer), ‘온라인 유력자’(e-fluentials) 등 미디어 환경에 따라 명칭과 특성이 달라져 왔다.

여기서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는 첫째, 통치 주체로 ‘담론’을 소환할 수 있게 하며, 둘째, 개인이 자기와의 관계, 사적 개인들 간의 관계, 사회 제도와 공동체 내부에서의 관계, 정치적 주권 행사와의 관계 등 미시적 일상에서부터 조직 구성체와의 관계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상이한 형태들 사이의 상호 연관에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활동 혹은 실천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Foucault, 1977 ~ 1978/2004; Gordon, 1991/2014, 16쪽). 즉, 이는 통치의 주체로 국가 권력만이 아닌 미디어 담론, 개인이 속한 조직체 내부의 담론 및 가시적/비가시적 통제 전략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구조적 맥락과 개인의 미시적 차원의 상호 관계 속에서 “행실의 프로그램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Foucault, 1975/2003, 121쪽).

또한 푸코는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인구의 생 정치(bio-politics) 측면에서 자유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 유형들이 “자력으로 소멸”하거나 근대의 인종주의 기획 속에서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묶이게 된다는 점을 포함한다(Sakai, 2001/2011). 권력에 의해 형성되는 지식, 그로 인해 생산되는 ‘진리’는 정상/비정상의 기준을 만들어 인간을 분류한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직업에 걸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적’ 발언과 행위, 규범이 지속적인 담론의 작업을 통해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잉여 존재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된다.⁵

물론 이러한 논의는 권력-개인의 관계에 있어 주체화의 ‘효과’ 측면

5 이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는 오늘날, 각 조직들이 구성원을 훈육시키는 방식과 관련된다. SNS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회사 정책이나 관리 체계를 비판한 글을 SNS로 게시한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기업이 직원 SNS를 엿보는 데 대한 친반양론, 채용 시 부적절한 지원자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SNS를 살펴보는 일 등이 관례가 되고 있다. 또, IBM을 비롯하여 미국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 직원의 SNS 이용 가능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GM과 코스트코 등에 ‘SNS 정책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정책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다(국민일보, 2014. 6. 10.).

만을 고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시도가 늘 ‘대항 품행’을 전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체의 저항 가능성 을 언급한다(Foucault, 1977~1978/2011, 314쪽).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체의 저항보다는 뉴미디어를 계기로 동원되는 권력의 전략에 주목한다. 특히 법관의 SNS 이용이라는 문제는 조직 내 개인의 미디어 이용이라는 문제가 사회 내 대부분의 인구에게 적용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보편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학력, 성별, 소득 수준 및 개인 성향의 차이에 따라 뉴미디어의 수용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나 뉴미디어는 연령에 따라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뉴미디어가 어떤 집단에게는 자신들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공포감 을 야기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개인 미디어의 대중화로 모든 개인이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개인이 사회에 가시화되고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 특성과 공인의 의무를 주장하는 담론적 작업은 한 사회 내의 성원권 분배 방식과 관련된 인정 투쟁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김현경, 2015, 63쪽). 뉴미디어는 신문, 방송 등 올드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기득권 중심의 보수 미디어 그룹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 ‘위기’(crisis)를 계기로 미디어는 ‘위험’과 연관되며 사회가 뉴미디어를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다(주재원 · 나보라, 2009).

4) 폐쇠의 담론 이론의 의미와 분석 틀

뉴미디어의 특성과 법관의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규정짓고 그에 따라 행위의 정상성/규범성을 정의하는데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론은 텍스트 그 자체, 그리고 텍스트와 관련한 맥락을 통해 적절한 발화의 내용, 주체, 대상, 방식 등에 대한 규범을 생산하고 권력, 미디어, 개인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권력이 개인

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할 수 있는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이 어떤 발화를 했을 때, 어떻게 개입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미디어 종류에 따라 개입 정도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담론은 권력의 실천을 정당화하거나 제도화하고, 혹은 반대로 그러한 권력의 실천을 제지하고 반대하는 ‘물질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담론 분석을 통한 사회 비판”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지향하는”(신진욱, 2011, 13쪽)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입장을 취하며, 그중 미셸 페쇠(Michel Pêcheux, 1975)의 담론 이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⁶ 페쇠는 푸코와 알튀세르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들 논의의 한계를 발전시켜 담론의 변혁 가능성까지를 논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알튀세르(Althusser, 1971/2006)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억압적 국가장치뿐 아니라 언론, 교육, 문화 등이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동해 오고 있으며, 이것이 ‘생산 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통해 종속과 분할을 도구삼아, 그리고 억압적 국가 장치를 방패로 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하도록 돋는 것이다(MacDonnell, 1986).

여기서 적용하려는 페쇠의 담론 분석 틀은 선구성, 절합, 호명 기제로 정리할 수 있다. 선구성(the preconstructed)이란 이데올로기 국가 기구들의 복합체(ISAs)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구성체를 말하며, 담론 속 호명된 개인에게 현실성(reality)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 그러나 실제(the real)는 아닌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의 이미지다. 선구성은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 사

⁶ 신진욱(2011)은 비판적 담론 분석이 자기 완결적인 방법론적 체계가 존재하거나 일관된 이론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사회적 실천으로 보고 이를 포괄적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명한 진리, 상식으로 자연화된 것을 말한다(Pêcheux, 1982, p. 183).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담론이 주장하는 밖에서 이미 구성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주장에 함축하고 있는 당위적 주장 등을 의미한다. 이는 ‘~는 것’, ‘~라는 사실’ 등의 표현을 통해 현실성 효과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강진숙, 2006, 17쪽).

한편 절합은 단어, 표현, 명제 등의 요소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의 관계로 의미 효과의 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말했듯이’(담론 내적 상기), ‘모두가 알고 있듯이’(주제의 보편성 강조) 등의 표현으로 사회적 합의나 보편성으로 해당 주장을 치환하여 확신을 제공하는 언어적 기제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한 사안을 익숙한 용어로 치환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또한 이러한 방식에 속한다. 이는 모든 주체를 ‘대체 불가능한’ 단일체로 주체화하려는 알튀세르적 호명의 효과를 의도하는 담론 전략을 말한다(Pêcheux, 1982, p. 121). 또 ‘~ 때문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잘못) 규정하는 역할, 따라서 특정한 대안으로 유도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문장, 단어, 절의 결합이나 특정 단어의 과소 혹은 과다 사용을 통해 개별 문장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 또한 이에 속한다. 물론 이는 담론 주체의 의식 수준이나 담론 내적인 차원에서의 개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선택과 배제 행위로 ‘선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강진숙, 2006 참고).

폐쇠를 분석 틀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는 폐쇠의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의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 주체 범주, 호명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폐쇠는 특히 담론이 ‘대립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푸코의 담론 분석이 가졌던 부르주아 담론 위주의 분석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동일시/반동일시/역동일시의 주체 호명 기제의 구체화를 통해 알튀세르의 ‘호명’ 논의에서 전제되었던 주체의 수동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MacDonnell, 1986). 즉, 폐쇠의 논의는

담론이 지배 구조의 재생산을 수행하는 담론적 실천의 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혁적 전망을 실천하는 ‘진영 재편 작업(a work of re-configuration)’(Pêcheux, 1982, p. 155; 강진숙, 2006, 21쪽)의 현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한 그는 담론의 이분법적 대립이 지배 담론에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지배 담론을 따르는 ‘좋은 주체’를 생산하는 동일시,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나쁜 주체’를 생산하는 반동일시는 지배 담론에 대한 동조/반대를 말하지만 모두 지배 담론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변혁의 주체가 생산될 여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페쇠는 ‘역동일시’를 통해서 정(正)-반(反)을 넘어선 새로운 주체의 탄생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강진숙, 2006, 21~23쪽). 정리하면 담론적 실천 속에서 담론의 주체화가 이루어지고, 주체 범주는 단순히 지배 담론에 대한 동조/저항이 아니라 재생산과 변혁의 전망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페쇠는 알튀세르, 푸코의 영향으로 이들의 논의를 발전시켜 담론의 이데올로기 효과와 ‘물질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담론이 ‘대립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나아가 주체의 동일시뿐 아니라 반동일시, 역동일시까지 지적함으로써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의 존재와 역할의 의미를 파악한 것은 물론 그러한 담론 대립에서 벗어난 능동적 주체의 생산 가능성 또한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Pêcheux, 1975; 강진숙, 2006 참고).

또, 담론 간 유사성에 따라 담론의 연합이 나타나는데, 푸코(1969/1992)는 ‘담론 구성체’(discursive formation) 개념을 통해 담론적 사건들이 동일 대상에 대한 것이고, 같은 스타일을 공유하며, 공통의 제도적, 행정적, 정치적 패턴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⁷ 이병욱·김성해

7 담론 구성체는 네 가지 규칙을 따라 형성된다. 첫째, 대상의 형성이다. 담론은 담론 내부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분류 체계와 설명 체계를 통해 대상을 정의하고 그것을 통해 담론 경계를 한정짓는다. 둘째, 언표 행위 양태의 형성이다. 이는 담론이 그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특정한 주체-위치를 부여하게 되는가와 관련된다. 즉, 담론의 ‘주체 형성’을 의미한

(2013, 75~76쪽)는 ‘담론 복합체’라는 개념을 통해 국내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종북 담론 형성과 보수 정권의 탄생을 연결짓는데, 이 개념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 재무부-월가 복합체, 9·11 이후 정치-군사-언론 복합체 등 특정 권력집단 간의 유착 관계를 드러내 주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여기에는 언론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된다(이병욱·김성해, 2013; Sakai, 2001/2011). 이 글에서도 보수 신문의 담론 배치 방식과 전략이 ‘지배 블록(bloc)’의 담론으로 대법원의 법관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유도해 내는 등 실질적인 물질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저항 담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회의 지배 블록 내에서 주체를 ‘구성하려는’ 담론의 구성적 측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 분석 대상 및 분석 틀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법관들의 SNS 이용 관련 사례에 대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담론을 분석하고, 법원 내에서 형성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진행 과정은 〈표 1〉과 같다.

법관들이 SNS를 통해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통과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등을 비판하거나 당시

다. 『임상의학의 탄생』 중 의사-환자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이라는 제도와 진료실이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샛째, 개념의 형성이다. 담론을 구성하는 일련의 언표들은 다양한 개념들의 연쇄를 통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형성이다. 이는 담론 안에 존재하는 언표들을 일정한 규칙을 통해 배치하고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Foucault, 1969/1992, 68쪽).

표 1. 법관들의 SNS 이용 관련 사례의 주요 내용

구분	SNS 발언 내용	최초 미디어 보도	법원 내부 징계내용
최은배 (45 ·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2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 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 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 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 다가 다음날 삭제[발언 배경: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비판]	〈조선일보〉 2011.11.25. 1면 단독 『FTA 추진 대통령, 뼛 속까지 親美” 현직 부 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 란』	11.29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개최
이정렬 (42 · 당시 청원지법 판사, 23기)		〈조선일보〉 2011.12.20, 23면 단독 『이번엔 '가카새끼 짬 뽕' 사진 올린 그 판사』	서면 경고 이후 재판 합의 과정 공개로 정직 6개월
서기호 (41 · 당시 서울북부지법판 사, 29기)	자신의 트위터(@gihos1)에 “방통위 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 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을 것 이다” “앞으로 분식집 졸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졸면 시켰다가는 가 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발언 배경: 방송통신심의위 뉴미디 어정보심의팀 신설 비판)	〈조선일보〉 2011.12.8. 1면 단독 『어느 현직 판사 “가 카의 빅엿까지 먹게…』	구두 경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틸락

유행하던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의 표현을 인용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을 ‘가카’ 등으로 비판, 조롱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한 데 대해 〈조선일
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함으로써 법관의 SNS 이용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었다. 〈조선일보〉가 1면 단독 보도로 판사들의

표 2. '법관 SNS 이용' 관련 각 키워드별 신문 기사 개수

키워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	한겨레	계
최은배	17	31	17	18	12	95
이정렬	26	34	29	17	13	119
서기호	41	34	27	33	25	160
가카 새끼	20	37	20	8	6	91
가카 빅엿	37	38	29	10	11	125
합계 (중복 제외)	80	102	73	58	56	369

SNS 이용을 문제 삼은 뒤, 법관의 윤리, SNS의 매체적 성격 등에 대한 기획, 연재 기사가 주로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여론화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SNS의 매체적 성격과 법관의 미디어 이용 윤리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보수 신문들은 주로 해당 판사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제목이나 내용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카', '가카 새끼',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은 해당 판사를 수식하는 어구로 따라붙었다. 이에 따라 '최은배', '이정렬', '서기호' 등 해당 판사의 이름과 '가카 새끼', '가카 빅엿'이라는 키워드로 5개 신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해당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던 시기를 고려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기사 원문 검색 서비스인 '아이서퍼'를 이용하여 5개 신문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총 369건의 기사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2〉를 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비해 2배가량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막말 표현을 보도 내용 및 제목에 포함시킨 기사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각 8건, 6건으로 보수 신문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표 3. 폐쇠의 논의를 활용한 담론 분석 틀

선구성 (The preconstructed)	절합 (articulation)	호명 (우리 vs 그들)
상식, 자연화된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 사이의 관계, 전제/함축된 것	은유적 표현, 언어적 표현, 특정 단어의 과다/과소 사용, 인과 관계의 표현(~ 때문에) 등 담론 내적 질서	담론의 대립과 주체 생산

2) 분석 틀

앞선 폐쇠의 담론 분석 틀과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담론 분석 틀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이 연구는 담론이 법관의 SNS 이용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공·사 영역 및 공인/사인의 경계를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보수/진보 담론이 ‘우리’와 ‘그들’의 대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법관의 SNS 이용 문제에서 매체의 특성과 주체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있어 ‘담론’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4. 선구성(the preconstructed): 공·사의 대립 구도에 따른 담론의 ‘자연화’ 전략

선구성은 담론 외적 개입의 형태로 담론에 이미 함축되어 있거나 전제되어 있어 특정한 현실을 ‘자연화(naturalize)’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이는 ‘우리’가 ‘상식(common sense)’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현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첫째로는 “~는 것”, “~라는 사실”과 같은 현장 진술을 통해 특정한 현실에 실재감과 위기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공인과 사인 등 공(公)과 사(私)

를 둘러싼 담론의 대립을 통해 공유된 전제를 확인시키며, 특정 영역, 특정 직업군에서 행해야 할 규범과 윤리를 자연화하는 역할을 한다.

1) 현실에 대한 진단

먼저 담론은 “~는 것”, “~라는 사실” 등의 표현을 통해 특정한 상식으로 전제되어 있는, 이미 구성된 것을 통해 현실성을 획득한다. 이 사안에서는 〈조선일보〉가 해당 판사들의 SNS상 발언을 신문 1면에 단독 보도하면서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로 긴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의 첫 보도는 다음과 같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인 A 부장판사의 이 글에는 두 시간 만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B(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C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가량이다.

– 조선일보 (2011. 11. 25). “FTA추진 대통령, 뼛속까지 親美”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

이 기사에서는 해당 판사의 페이스북 발언을 주요 언론사 중 ‘단독’으로 ‘1면’ 보도하면서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이미 공론화되었다는 인식을 준다. 또, 해당 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 부장판사의 친구들 일부가 이 연구회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고자 한다.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명기하면서 이 발언의 ‘전파성’을 암시한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14면에 이 기사와 연결된 기사로 ‘美선 대법원장이 서기에게도 “트위터 사용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하였고, ‘FTA 통과는 “나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판사’라는 제목의 [사설]도 내보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법관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또, 해당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회적 현안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⁸

〈동아일보〉도 11월 26일자 [사설]에서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을 강조하면서 특정 정치 성향의 모임을 대법원장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최 부장판사를 ‘성숙되지 못한’ 이념적 ‘편향’으로 규정하고, 최근 판사들의 잇딴 SNS 발언을 진보적 편향, 재판의 편향으로 연결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을 SNS와 같은 ‘공개적’ 공간에서 하는 것이 재판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⁹ 〈중앙일보〉(2011. 11. 29)는 [사설]에서 ‘법관은 중립적이며 판결로 말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며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관의 SNS 발언

8 법관들마다 사회 현안에 자기 의견을 제멋대로 밝힌다면 그 법관이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 재판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미국 배심원 만큼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겠는가(조선일보, 2011. 12. 1, [사설] 한국 법관 공정성이 미국 배심원만도 못하다면).

9 보수 신문들이 해당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을 강조하는 것은 SNS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중앙일보〉는 2011년 11월 29일자 6면 “또 하나의 미디어 SNS, 진실·괴담 거름 장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SNS를 통한 루머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토론회를 전하면서 트위터상에서 47.7%가 민노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좌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1. 11. 29, 또 하나의 미디어 SNS, 진실·괴담 거름 장치 있어야).

사례들이 “법관 스스로 거칠고 편파적인 글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고 논란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의 직업윤리관에 대한 보수 신문의 상식을 보편화한다.¹⁰

이처럼 보수 신문들은 ‘국민’이라는 보편성으로 법관들의 SNS 이용이 ‘문제적’이라는 현실 효과를 구성한다. 정권 비판적 발언과 농담, 사적 의견 등을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라는 틀로 구성하면서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핵심인 판사 직무에 개인으로서의 편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진보 매체들은 〈조선일보〉의 적극적인 의제화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써 담론 지형이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의 이슈화를 비판하면서 해당 판사의 발언을 “부장판사의 소신”으로 명명한다. 또, 해당 판사와 한 변호사의 발언을 빌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하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판사가 에스엔에스(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한다”고 이 신문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중략)

검사출신의 ㄱ변호사는 조선일보가 ◇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 “사상검증을 시도한 기사”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과 ◇판사가 글을 올린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나”라며 “동의하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떤 단체에 속했는지 확인해, 그걸로 공격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스

10 법관윤리강령은 1995년 제정됐다. 그 이전엔 판사들 사이에 규정이 아닌 양심과 판단자로서의 직분에 따른다는 직업윤리관이 요구됐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여전히 법관이 양심과 중립의 직분에 충실했다고 믿고 싶어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중앙일보, 2011. 11. 29, [사설] 법관이 정치논란에 앞장서서야).

럽다”고 지적했다.

– 한겨례 (2011. 11. 26). ‘FTA 반대’ 부장판사의 소신.

〈경향신문〉은 SNS가 ‘지인들끼리’ 소통하는 개인적 공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판사가 ‘공직자 이전에 시민’이므로 정당한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정리하면서(경향신문, 2011. 11. 27) 논란을 만들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조선일보〉의 시도에 대해 이 사안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2) 담론의 대립과 공·사에 대한 전제

(1) SNS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규정

보수 신문들이 판사들의 SNS 이용 제한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SNS가 공개적인 공간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판사에게도 사적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것은 사적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SNS와 같은 “공개적” 공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SNS는 친밀한 사람들끼리 소통의 수단으로 출발하지만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속해 그 의견을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SNS는 사적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SNS 내에서 공무원의 사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판사가 이런 구속이 싫으면 법복을 벗으면 그만이다.

– 동아일보 (2011. 11. 30). [사설] “판사, SNS 발언 분별력 있게 하라”는 대법원 권고.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친구’ 관계를 맺은 뒤에 서로의 관심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다. 페이스북이 사적

(私的) 공간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올린 글은 언제든지 ‘친구’들을 통해 밖으로 퍼져 나가기 쉽고, 실제 이 부장판사의 글도 그렇게 외부에 유출 됐다.

– 조선일보 (2011. 11. 25). “FTA추진 대통령, 뱃속까지 親美”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

보수 신문들도 SNS가 ‘친구’, ‘인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보다도 ‘친구’ 관계를 기반으로 ‘밖으로’ 혹은 ‘다수에게 전파’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SNS는 사적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 논리는 공개성,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서는 법관이 개인의 의견 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SNS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법관의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속이 싫으면 “법복을 벗으라”는 주문으로 나아간다.

반면, 진보 신문은 대체로 보수 신문의 적극적인 의제화에 대한 대항 논리를 논증해 가는 방식을 취한다. SNS를 공적 공간이라 주장하는 보수 신문에 대해 SNS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친교의 공간이며, 공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판사 또한 시민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관의 SNS 가이드라인 마련을 또 하나의 통제 조치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최 판사의 글이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견해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설령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경향신문 (2011. 11. 27). [사설] 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은배 부장판사 건을 검토하였다. 이 건은 판사의 SNS 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 접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므로 바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았으나 이후 이정렬, 서기호 판사의 SNS 발언 등으로 판사들의 SNS 이용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되면서 2012년 2월 10일 사법정보화연구회 주최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토론회’가 열렸다.¹¹ 여기서도 SNS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이 지적된다. 그런데 SNS는 “공개를 지향” 혹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된다. 법관에 대한 주목도를 고려할 때 법관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리트윗이나 공유, 언론사 보도 등으로 확장되어 공적 공간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46쪽).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전제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 가이드라인의 형성과 법관의 정치적 발언, ‘막말’의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것이 매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므로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통제로 비춰질 수 있으며, SNS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임을 지적하며 가이드라인과 같은 통제 조치를 비판하는 한편, 판사의 정치적 중립, 특수 직무 종사자로서 의견 표명 금지, 품위 유지 의무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¹²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7호로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2012. 5. 17). 여기서는 SNS상의 의사소통이 ‘즉각적’이며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널리 전파되어 계속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법관 스스로 오해의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각종 쟁점 사안의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하고, SNS는 공개적 공간이므로 의견 표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¹¹ 이 토론회 자료를 토대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관, SNS로 말하다』라는 단행본도 출간되었다.

¹² 위 토론회 자료의 토론문 참고(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140~156쪽).

이 같은 대립적 논란은 “어떤 언행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공적 공간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나 언행의 의도 등을 다르게 취급”(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49쪽)하는 공·사 영역에 대한 오랜 전제를 근거로 한다.¹³ 이는 또 준이치의 지적대로 “공개(open)된 공간”과 “공공(public)의 공간”이 같은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¹⁴ 의도된/무의식적 공개와 공적인/사적인 발언, 공적/사적 공간의 정의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와 같은 논쟁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법원 내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 공무원, 기업, 언론사 등 다른 직업 집단, 조직에서 개인의 SNS 이용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도 연결된다는 점이다.¹⁵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강제성을

13 위 토론문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나타나는 ‘공연성’과 ‘전파성’의 측면에서 행위의 법률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SNS에서의 사안과 유사한 것으로 언급된다(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49쪽).

14 공적 공간이라는 표현에는 ‘공개’된 장소, ‘공공의’ 장소라는 의미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공개와 공공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공간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지적된다(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49쪽).

15 비슷한 시기 ‘군인’들의 SNS 이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2012년 초 현역 복무 중이던 이모 대위가 자신의 SNS상에서 군인 신분을 숨기고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 구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순 기카!” 등의 글과 “육군 소장이라는 작자 주동이리에서 정신질환은 정신력 부족이라는 혀소리가 가능한 거다” 등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제6항소법원은 SNS상의 게시판이 이용 대상을 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자가 실질적으로 다수 이용자들에게 공개를 의도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판결 [상관모욕], 굵은 글씨는 연구자가 강조한 것). 이러한 사건으로 「군 SNS 활용 행동강령」(장관 지시 제12-4011호, '12. 8. 13)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내용이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국방부훈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안준형, 2014, 208~209쪽). 또 일반 병사들의 SNS 이용 문제도 불거졌는데, 국방부는 〈나는 꼼수다〉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군 장병들에게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2012. 1. 31)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군사보안업무훈령, 군인복무규율 등을 제시하여 군 장병들이 SNS 이용 시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가지며, 이는 대다수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2) 판사 직무에 대한 담론 대립

SNS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담론의 대립뿐 아니라 판사 직무에 대한 담론의 대립 또한 나타난다. 〈동아일보〉는 1면, 3면, 사설을 통해 판사 개인 의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판사가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지므로 판사의 “사적(私的) 자유”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속해 그 의견을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높은” SNS 내에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공무원 및 법관의 SNS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6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누구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서기들에 게도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법원 구성원의 SNS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조선일보 (2011. 11. 25). [사회] 美선 대법원장이 서기에게도 “트위터 사용 말라”.

법관의 중립성, 법관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선진국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 한 판사가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이 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후 일본 법조계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법관의 양심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우선하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11. 12. 1). [특파원 칼럼/최영해] 美-日 “법관의 입은 개

인의 입 아니다”.

이들은 특히 “법관의 양심”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대립시키면서, 선진국에서는 법관의 입이 “개인의 입”이 아니며(동아일보, 2011. 12. 1), 법관의 중립성이란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심”이란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공인인 법관의 의무와 대립되는 개인의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즉,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이 싫으면 “법복을 벗으면 그만”(동아일보, 2011. 11. 30), “법복을 벗는 게 정상”(조선일보, 2011. 11. 25)이다. 또 여기서 대법원은 “불법과 폭력과 괴담이 판을 치는” 혼란의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 주는 어른”으로써 ‘우리’의 뜻을 저버린 ‘그들’에게 ‘어른’으로서 조직 내 일탈자를 통제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된다(중앙일보, 2011. 12. 1).

그런데 보수 신문들의 이러한 비판은 사실상 한·미 FTA를 둘러싼 개별 신문사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¹⁶ 해당 판사들의 발언이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데서 출발했듯이 사법부 내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법원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노컷뉴스, 2011. 12. 2). 그런데 12월 3일자 〈동아일보〉는 판사가 국회를 비판하는 것이 ‘월권’이며, 판사의 역할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적용하는 일’로 한정 짓는다. 법관

¹⁶ 이렇게 판사들이 SNS를 통해 현실에 개입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배경은 한·미 FTA가 ISD(투자자 소송제도)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5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알 만한 사람들은 이거 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청계천, 4대강 등도 반대가 많았는데,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경향신문, 2011. 11. 26, [종합] 이 대통령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보수 신문들은 FTA에 찬성하고 진보지들은 FTA를 반대하고 했는데, 이러한 대립에 따라 판사들의 SNS 발언에 대한 의견도 같았다. 해당 판사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비롯해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다.

들이 FTA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법관의 본분을 잊고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법관’의 의무와 규범적 역할에 대한 담론을 생산한다.

보수 신문들은 이처럼 ‘법관’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데, 단순 보도에서 기획, 연재, 사설 등을 오가면서 사안을 이슈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판사의 규범적 역할은 SNS와 같은 공개적 공간에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지 않는, 또한 조직 일원으로서 어른– 대법원(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보수 신문들은 국민, 우리의 이름을 빌어 조직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비판하거나 법관의 발언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해당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면서 다른 판결이나 다른 업무 처리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형성한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공직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별개이며 SNS가 ‘사적 공간’이라고 강조하는 최은배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내용¹⁷을 1면과 3면에 실으며 반론을 강화했다.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별개”(경향신문, 2011. 11. 26)이며 “정치 중립” 운운은 입 틀어막기일 뿐”(한겨레, 2011. 12. 3)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갖지 않아야 한다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편견에 관계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중립성의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임명권을 가진 정치집

17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군인이나 판사, 하급직 공무원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지만 교사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무원은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는 것이다**”(경향신문, 2011. 11. 26, [종합] 3면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시민으로서의 자유는 별개”).

단과 “이해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규정을 정치적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우선 이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집권 정당)에 대한 봉사를 강요받지 않음을 보장한 것이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빌미로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정부와 정부관료에 대한 비판에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 중 핵심이다.

– 경향신문 (2011. 12. 1). [기고] 법관의 정치적 자유, 오승철 헌법학자·변호사.

사법정보화 연구회에서 발표한 노동일 교수 또한 SNS가 공적 공간이라고 해도 법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¹⁸ 공무원도 선거권이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을 위한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이 전적으로 배제된 선거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오류와 독선을 막기 위해서도 법관의 정치적 표현이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관의 SNS 사용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이

18 헌법 제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재 결정례(89헌마32, 95헌바48 등)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노동일, 2012 참고).

표 4. SNS의 매체적 속성과 법관 직무의 특성에 따른 규제 논리

SNS 법관	공(公)적 공간	사(私)적 공간
	공연성(공개성), 전파성(확산성)	개인적, 사적, 폐쇄적
공인	국가, 국민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로서의 공인 → 공적 공간에서 개인 의견 표명 자제	'공인'이므로 '사적 의견은 '사적 공간'에서도 표명 불가(법관의 품위 유지는 사적 공간에서도 유지되어야 함)
	모두에게 '공통된' 일을 하는 사람 → 공익과 무관한 '사적' 의견을 공적 공간에서 표명할 수 없음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표현 의무 헌법이 보장
	공식적, 공적 업무 담당자 → 업무 무관한 개인 의견 표명하지 말아야 함	'공인'이라 해도 업무 외 사적 공간이므로 개인적 발언 가능
사인	법관도 사적 시민이므로 정치적 표현 가능	법관도 사적 시민이며, SNS는 개인적 공간이므로 의견 표명 가능

* 굵은 글씨는 규제 정당화 논리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4〉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SNS와 법관의 공·사적 성격에 따른 규제 정당화 및 반대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공·사의 대립은 준이치(Junichi, 2009/2010)가 정리한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틀에서 SNS는 '공개적, 폐쇄적'이라는 차원의 의미 대립으로 정의되는데, SNS는 보수 신문에 의해 주로 '공개적'이라는 의미에서 공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법관의 직무는 국가와 국민에 의해 임명받은, 모두에게 공통된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인' 것이다. 반면 해당 판사들 개개인과 진보 신문들이 규정하는 SNS는 지인들 중심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이다. 지배적인 담론은 판사를 '공인'으로, SNS를 '공적 공간'으로 규정하는 담론이다. 공인은 공적 공간에서 개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 공인이냐 사인이냐의 대립 속에서 '사인'으로서 개인은 개인적 표현이 가능하며, 공적 공간이냐 사적 공간이냐의 대립 속에서 사적 공간이라면 표현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분된다. 진

보 신문의 담론이 이 틀에서 보수 신문과 대립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법관이 공인이고 공적 공간이라고 규정된다 해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이 가능하고, 공적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역담론의 논리로도 나아가고 있다.

5. 절합(articulation): ‘막말’의 강조와 조직 내 배제 과정

절합은 익숙한 것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은유적 기법, ‘A 때문에’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어떤 문제의 원인이 A인 것처럼, 따라서 A가 시정되어야 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로 나아간다. 또, 특정한 어휘를 과다/과소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인 효과를 낸다.

그렇다면 보수 신문들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 어휘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보수 신문들이 해당 판사들의 막말 표현을 기사 제목에 배치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판사들을 특정한 이미지로 구성해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수 신문들은 ‘막말’이 법관의 본분,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최은 배 부장판사의 “뼛속까지 친미” 발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서기호 판사의 “가카의 빅엿”, 이정렬 판사가 올린 “가카새끼 짭뽕”이라는 이름의 패러디 라면 등이 그 예로, 이러한 언어는 SNS의 사적 성격이나 발언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인용된다.

최 부장판사 발언과 이후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근심을 안기는 것이었다. 일단 그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어휘 구사력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뼛속까지 친미인 … 나라를 팔아 먹은…”(최 부장판사), “보수 성향 판사들은 사퇴해라 … 개그맨이 부럽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송승용 수원지법 판사). 이 나라 판사들이 시정집배나 쓰는 수준 낮은 어휘를 쓰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운동권 구호 같은 글을 쓰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 중앙일보 (2011. 12. 1). [사설] 대법원 무시하고 막 나가는 판사들.

이러한 발언은 “시정잡배나 쓰는 수준 낮은 어휘”, “기대 이하”로 묘사되면서 판사와 “시정잡배”를 대립 구도 속에 위치시키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어휘력과 수준을 가진, 그리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법복을 벗어야 할” 판사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보수 신문들은 해당 판사들을 ‘막말 판사’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들의 구체적인 막말 발언을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속에 배치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카 새끼’ ‘가카 빅엿’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개수가 조, 중, 동의 보수 신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목에 해당 판사들의 막말을 배치한 경우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¹⁹ 이러한 막말은 당시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경향신문〉은 2011년 12월 27일자에 “올해의 단어”로 ‘가카’를 꼽으며 이 단어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과잉 진압을 풍자하면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4월부터 시작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꿈수다〉의 수식어인 ‘가카 현정방송’ 등으로 대중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통령 관련 비리나 각종 정책 등을 ‘강행’하는 불통의 이미지에 대한 풍자의 표현으로 ‘가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 즉, 판사들의 막말이 당시의 유행어였지 판사 개인의 습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법원, ‘막말 판사들’ 재판 못하게 할 방안 찾아야”(2011. 12. 23)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장이 법관은 사적(私的) 공간에서도 언행을 조심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했는데도 들

¹⁹ 물론 기사 본문에 이들을 ‘가카짬뽕’ 판사, ‘가카 빅엿’ 판사 등으로 설명한 경우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제목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보수 신문에서는 막말 표현을 제목으로 배치한 경우가 〈조선일보〉는 21건, 〈중앙일보〉는 18건, 〈동아일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은 척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대법원장과 평직원으로서의 판사라는 ‘어른아이’, ‘상사-부하직원’의 위계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버릇없는 아이, 통제 불가능한 직원의 일탈로써의 막말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판사들을 ‘유아화(infantilization)’하고 익숙한 구도로 치환하여 대중의 이해를 단순화한다(김현경, 2015, 141쪽). 〈중앙일보〉(2011. 12. 9)는 미국(리보비츠)과 프랑스(장피에르 봉투) 판사의 의견을 빌어 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며 어느 나라서든 ‘말조심’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강조한다. “막말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은 국민은 없다”(조선일보, 2011. 12. 8)라는 제목으로 막말 판사를 국민인 우리와 대척점에 두고, 그들이 “스스로 신뢰를 깨아먹은”, “튀는”(조선일보, 2013. 10. 9) 일탈자라고 묘사한다. 또, ‘가카새끼’ 판사는 신성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을 ‘놀림거리’로 만들었다(동아일보, 2011. 12. 24)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보수 신문들의 방식은 해당 판사들을 판사 권위에 걸맞지 않는 저속한 어휘를 쓰는 개인으로 틀 짓고 이들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법원 조직 내에서 ‘배제’되었다. 서기호 판사와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결국 “법복을 벗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최은배)로 일하거나 국회의원(서기호)²⁰, 로펌 사무장(이정렬)²¹으로 일하는 등

²⁰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5월 25일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그는 2012년 8월 28일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기호 전 판사는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이의 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전까지는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연임에서 제외된 판사가 없었는데 본인에 대한 연임 심사 당시에 ‘누적 평정 결과 하위 2%’라는 연임 부적격 판단 기준을 세운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심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뉴시스, 2014. 8. 13).

표 5. 조직 내 구성원의 배제 논리

금지 대상	분할과 배척	진위 대립
법관의 정치적 표현 공적 공간에서 공인의 표현 법관의 막말	일탈자, 비정상인으로서 규정 조직 내 배제	SNS의 매체적 특성 공인의 SNS 이용 규범

법원 조직에서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사들이 보수 신문의 주문대로 결국 법복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문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들의 막말 표현을 인용하였다. “가카비였” 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입당”(조선일보, 2012. 3. 3), “가카새끼 짬뽕” 판사, 변호사 등록 제지당해”(조선일보, 2014. 2. 18), “‘가카새끼’ 파문 이정렬 전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동아일보, 2014. 6. 9), “‘가카짬뽕’ 이정렬 판사 오늘 징계위”(중앙일보, 2012. 2. 13) 등의 표현으로 보수 신문들은 해당 판사들이 법원 조직에서 나와 다른 직무를 맡았는데도 이들의 막말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판사들을 ‘막말 판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푸코(1972)는 배제(exclusion)의 외부적인 과정은 금지, 분할과 배척, 진위의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보수 신문과 법원이라는 전통적 권위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의 정치적 표현은 금지의 대상이 된다. 또, 미디어 특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적 영역인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막말은 이성적,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공적 인간, 공적 영역에서의 ‘의무’를 저버린 일탈적 법관에 대한 ‘분할’과 ‘배척’이 일어난다. 가이드라인을 제정

21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은 부적당하다”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이정렬 전 판사는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는 없지만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로펌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동아일보, 2014. 6. 9, ‘가카새끼’ 파문 이정렬 前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하여 법관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가 하면, 문제적 법관들을 공동체의 ‘일탈자’, ‘비정상’으로 규정하여 분할, 배척하는 데 보수 담론이 일조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원과 법관 집단 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사, 기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 집단 내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²²

6. 주체의 호명: 우리 vs 그들

폐쇠는 담론이 적대적이라는 입장을 통해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 담론의 역할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담론이 동맹자, 내부집단, 우방으로서의 ‘우리’와 외부집단, 적으로서의 ‘그들’을 상정하여 대립되며, ‘우리’를 ‘좋은 주체’로, ‘그들’을 ‘나쁜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 또한 정리하고자 한다. 담론은 매체 특성에 대한 대립뿐 아니라 ‘우리’(us)와 ‘그들’(them)을 분리하여 양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대립을 생산한다.

보수 신문이 가정하는 ‘우리’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판사이며, 진보 신문이 가정하는 ‘우리’는 일반 시민과 같은 보통의 시민으로서의 판사를 가정한다. 또 보수 신문은 ‘그들’로 좌편향적이고 정치적 발언을 표명하는 판사, 수준 낮은 어휘를 쓰는 판사를, 진보 신문은 시민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여 배제하려는 보수 세력을 그들로 규정한다.

22 각주 15)에서 언급한 군 조직 내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신문사, 방송사 등의 언론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자사 직원들의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1. 31, 34~36쪽 참고).

또 2014년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직이 박탈되는 사례도 있었다(뉴시스, 2015. 12. 28, 대법, ‘박원순 지지 · 대통령 비방’ 혐의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최 부장판사 발언과 이후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근심을 안기는 것이었다. 일단 그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어휘 구사력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뼛속까지 친미인 … 나라를 팔아 먹은 …”(최 부장판사), “보수 편향성 판사들은 사퇴해라 … 개그맨이 부럽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 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송승용 수원지법 판사). 이 나라 판사들이 시정잡배나 쓰는 수준 낮은 어휘를 쓰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운동권 구호 같은 글을 쓰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 중앙일보 (2011. 12. 1). [사설] 대법원 무시하고 막 나가는 판사들.

여기서 전제된 판사는 ‘운동권’이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기계적으로 중립의 인간을 상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판사의 품위를 깎아 내리는 막말 판사들이다. 또, ‘그들’의 일탈로 “우리는 대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중앙일보, 2011. 12. 1)며 SNS와 같은 ‘공개적’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과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미숙’한 개인으로서의 판사가 법관 권위에 걸맞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다.

반면, 진보 신문은 공직자로서의 판사도 ‘우리’와 같은 ‘시민’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최 판사의 글에 저급한 색깔론을 입히거나 징계 운운하는 단세 포적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 글의 근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시민이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역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쟁점에 대해 침묵하면서 법전만 들추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해야 하며, 발언

표 6.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에서 우리/그들의 대립

보수 신문		진보 신문	
우리	그들	우리	그들
중립적 개인적 발언을 공적 공간에서 하지 않는 판사	정치적 성향과 개인감정, 막말을 드러내는 '미숙'한 개인으로서의 판사	보통의 시민으로서 판사	시민에 특정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여 배제하려는 보수 세력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경향신문 (2011. 11. 30). [사설] 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에서 우리/그들의 대립을 정리하면〈표 6〉과 같다.

이처럼 각각의 미디어 담론에 전제되어 있는 '우리'와 '그들'의 대립은 누구를 포함/배제하느냐, 누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달아 있다. 또 이러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뉴스의 이야기 구조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의 적대성, 즉 의미의 대립을 구성하는데, 이는 구조적 문제를 집단 간, 세력 간 분쟁으로 집약시켜 특정 사안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명확히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표현의 자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SNS를 공적 공간으로 규정할 것이냐 사적 공간으로 규정할 것이냐와 같은 담론의 이분법적 대립은 하나의 선택지를 강요하여 사실상 '가진 적 없는 표현의 자유'(Holquist, 1994)를 전제하거나, 공간의 성격에 따라 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등으로 나아간다. 또, 보수 신문과 보수 정권의 '담론 공동체'는 '우리'의 범주와 기준을 엄격하게 세분화하고 '그들'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에 속하는 이들의 범주를 좁히고 있다.

7. 결론 및 한계

이 논문은 법관의 SNS 이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미디어 및 법원 내부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폐쇠의 담론 분석 틀을 중심으로 담론의 물질적, 대립적, 수행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폐쇠의 선구성, 절합, 호명의 틀을 통해 SNS의 매체적 특성, 법관의 의무에 대한 담론의 대립과 공·사 영역에 대한 오랜 이분법과 전제, 법관의 막말 표현을 과다 사용하여 해당 법관들을 ‘문제화’하는 보수 신문의 담론 전략, 우리/그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각각의 ‘우리’를 호명하고 있는 각 진영의 담론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관의 의무는 공·사 영역에서의 적절한 발언, 내용, 주체를 담론을 통해 규범화하는 과정이다. 보수 신문 중심의 지배 담론은 SNS의 공개성, 전파성을 주요 매체적 특징으로 보고 이에 따라 SNS가 ‘공적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재판관으로서의 법관은 국민에 의해 임명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법적 심판의 대리자로서 ‘공인’이므로 ‘공적 공간’에서의 개인적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진보 신문 위주의 담론은 SNS가 사적 공간이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이가 SNS가 공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공무원으로서 판사의 발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갖지 않는다거나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직무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보수 담론은 해당 판사들의 막말 발언을 문제화하여 법관 직무에 걸맞지 않는 인간형으로 문제화하거나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소속임을 부각시켜 이들을 오래된 색깔 논리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담론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뉴미디어에 대한 규정, 공인으로서 법관의 적절한 행위에 대한 담론화는 실제로 법원 내 SNS 가이드라인의 형태나 다양한 형태의 ‘배제’ 조치로 이어져 담론의 ‘물질적’이고 ‘수

행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말 발언, ‘개인적’ 발언은 ‘언어’로 매개되는 공적 의사소통의 장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암묵적 규범의 문제와 맞닿는다. ‘합리적’인 말하기 방식, 공적 공간에서 어울리는 주제 등에 대한 규범에서 어긋나는 대상이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Junichi, 2009/2010, 32~33쪽).

법관의 SNS 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법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통적 권위에 의해 뉴미디어 공간의 성격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고 그것이 뉴미디어에 대한 ‘진리’를 만들어 내며 그에 따라 공간에서의 적절한 품행이 규정되는 과정은 사회 내 다양한 조직체 내부에서 개인의 ‘품행을 인도’하는 역할과 연관된다. 실제로 공무원, 군인, 교사, 기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 집단 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의 SNS 이용 행위를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양한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치 기제로 작동한다.

이 연구는 매체 특성에 대한 규정, 그에 따라 매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대한 정의, 특정 직업인의 정치적 표현의 적절성 등이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는 주체가 담론에 의해 구성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할 우려가 있다. 연구의 한계는 아마 이러한 저항의 역동성을 그려내지 못한 부분일 것이다. 이는 분석 대상으로서 미디어 담론과 법원 내 담론을 택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지배 담론의 물질성과 수행성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SNS는 사적 영역, 일상, 개인의 표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사적 영역, 일상이 중시된다 해도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가치들이 곧바로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무엇을 정치화할 것인가는 담론과 제도의 역할에 달려 있다. 공과 사, 공인과 사인, 우리와 그들 등 대립적 구도는 동일시와 반동일시의 축을 오가는 한계를 지닌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온 한국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SNS 시대에 법관의 SNS 이용에 대한 논

의는 단순히 공과 사의 이분법적 논의 자장 안에서 오가는 것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폐쇠는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역동일시” 기제를 통해 제시했는데, 이는 대립적 담론 구도를 벗어난 새로운 담론 전략을 통한 것임을, 즉 새로운 상상을 위한 “담론의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권, 7~52.
- 국민일보 (2014. 6. 10). 직원의 SNS 엿보는 회사들… 감독이냐 월권이냐.
- 국회입법조사처 (2011. 1. 31).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 『이슈와 논점』, 192호.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18권 3호, 146~191.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노동일 (2012).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경희법학』. 47권 2호, 9~46.
- 노컷뉴스 (2011. 12. 2) 최은배 부장판사 “ISD는 사법권 침해”… 법조계 FTA 논란 확산.
- 뉴시스 (2015. 8. 13). ‘재임용 탈락 부당’ 서기호 의원, 대법원 상대 행정소송 패소.
- 뉴시스 (2015. 12. 28). 대법, ‘박원순 지지·대통령 비방’ 혐의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012. 5. 17).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 류정호·이동훈 (2011). 소셜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
- 문재완 (2012).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소통과 SNS』. 한국언론학회 엮음, 285~318.
- 박경신 (2012).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 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15집 3호, 127~157.
-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8호, 55~73.
- 사법정보화연구회 (2012. 4. 3).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호, 10~45.

- 안준형 (2014). SNS 공간에서의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경 제규제와 법』, 7권 1호, 207~225.
-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한국의 트 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2), 44~79.
- 이재현 (2012). 글쓰기 공간으로서의 SNS: 재매개, 환유, 애크프라시스. 『커뮤니 케이션 이론』, 8권 1호, 323~35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 25)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 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5-03』.
- 주재원·나보라(2009).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권 2호, 2~48.
-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8).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1. 31). 『SNS 이용자 Literacy 제고 방안 연구: SNS 쟁 점 분석과 이용자 가이드 제언』.
-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Monthly Review Press.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옮김 (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boyd, d. (2011). Social Network Sites as Networked Publics: Affordances, Dynamics and Implications. In Z. Papacharissi (Eds), *A Networked Self: Identity, Community and Culture on Social Network Sites* (pp.39~58). New York: Routledge.
- Eve, A., & Zuckerman, M. (2012). Ensuring an impartial Jury in the Age of Social Media. *Duke Law & Technology Review*, 11, 1~29.
- Foucault, M. (1972). *L'ordre du discours*.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옮김 (1992).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Foucault, M. (1972).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2003). 『광기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미셸 푸코 지음, 오생근 옮김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 Foucault, M. (1977~1978).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2004).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 Foucault, M. (1978~1979). *N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 Gerlitz, C., & Helmond, A. (2013). The like economy: Social buttons and the data-intensive web. *New Media & Society*, 15, 1348~1365.
- Gordon, C.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콜린 고든·그래엄 베젤·피터 밀러 역음,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옮김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13~84쪽). 서울: 난장.
- Harbermas, J.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옮김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Holquist, M. (1994). *Corrupt Originals: The Paradox of Censorship*.
- Junichi, S. (2000). *Kokyosei*.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태석·류수연·윤미란 옮김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서울: 이음.
- MacDon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200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총서.
- Miller, V. (2008). New media, networking and phatic culture. *Convergence*, 14, 387~400.
- Papacharissi, Z. (2010). *A private sphere: Democracy in a digital age*. UK: Polity Press.
- Pêcheux, M.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US: St.Martin Press.
- Sakai, D. (2001). 『自由論』. 사카이 다카시 지음, 오하나 옮김 (2011).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의 권력의 계보학』. 서울: 그린비.
- Taylor, C. (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찰스 테일러 지음, 이상길 옮김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서울: 이음.
- Taylor, C. (2013). *The Culture of Connec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일 06월 27일
논문 수정일 07월 27일
게재 확정일 08월 05일

A b s t r a c t

The Role and Opposition of Discourses about Judges' SNS usag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ith M. Pêcheux's
frame**

Nam-hee Hong

Researcher, Yonsei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s of media and courts about three judges' usages during 2011~2012. The SNS postings by these judges was set for social agenda by Chosun-Illbo. I want to emphasize the role of discourses which define features of new media, (im)proper behaviors and contents. By analyzing these discourses, it is revealed the relations of 'power-knowledge' and discourse strategies by power. And it can be interpreted 'governmentality' to conduct individual's behavior and soul by Foucault. As a result of this discourse analysis, it appears oppositional side about SNS's features and judge's (im)proper behaviors in opposite media. If they define SNS is public sphere, speeches of judges in SNS is improper because they are 'public man' not to speak their personal opinion. The conservative papers had an important role that judges are ruled out from their organization. On the contrary to this, discourses by liberal papers define SNS is private that ensure personal freedom of expression. In short, this normalization is working for governmentality over the society at large not just only for judges but also various individuals such as public officials, soldiers, teachers, journalists or employees in various organizations.

K E Y W O R D S social media • SNS • public/private sphere • judges
• discourses • governmentality